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11.23(금)10:00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1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22일

3. 제안 이유

-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기업지원 시설 확충시 예산지원 규정 마련(안 제12조)
- 나.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목표 수립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포상(안 제20조, 안 제21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업무 추진시 성과

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